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 으로 변경〉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총괄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일괄 개정의 적절성 검토 .....                                 | 2  |
| 3. 개정안의 검토 .....                                       | 5  |
| IV.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                                 | 10 |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10 |
|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12 |
|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br>관한 특별법 ..... | 14 |
|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16 |
|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1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보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Ⅲ. 총괄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일괄개정법률안은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해당 표현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형식은 제정안이나 실질은 개정안에 속하는 일괄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해당함.

#### 《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

| 법률 제명            | 현행법의 내용                                   | 개정 내용                                                         |
|------------------|-------------------------------------------|---------------------------------------------------------------|
| 공공기록물 관리법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                                           |                                                               |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법 |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법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

※ 개별 법률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개별 검토의견 참조

#### 2. 일괄 개정의 적절성 검토

법률의 개정은 하나의 법률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를 상호 간의 연계성이 높아 각각의 개정법률안으로 따로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다수의 법률을 하나의 법률안 본칙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이른바 일괄 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이러한 개정방식은 하나의 개정법률안은 하나의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의 예외이고, 대상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sup>

개정안은 여러 법률의 공통적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 개정보다 일괄 개정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sup>2)</sup> 대상 법률이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개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참고로,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 총 25건이 각각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발의되어 계류 중임.

---

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174.

2) 법제처는 비경제성·비능률성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2, p.644., 박성진, “입법 방식 중 일괄개정 방식의 타당성 검토”, 입법학연구 제16집 1호, 2019.2.28. p.188.에서 재인용.

##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개정안 발의 현황 》

| 구 분           | 소관상임위           | 의안명                                                                   |
|---------------|-----------------|-----------------------------------------------------------------------|
| 일괄법안<br>(11건) | 법제사법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03호)         |
|               | 정무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5호)          |
|               | 기획재정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18호)         |
|               | 교육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19호)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7호)   |
|               | 국방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02호)           |
|               | 행정안전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42호)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8호)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4호)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3호) |
|               | 환경노동위원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43호)         |
| 개별법안<br>(14건) | 정무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7호)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6호)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1호)                      |
|               | 행정안전위원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58호)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57호)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72호)                          |
|               |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9호)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5호)                                       |

| 구 분 | 소관상임위   | 의안명                                                                |
|-----|---------|--------------------------------------------------------------------|
|     | 보건복지위원회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r>(의안번호 제2115324호)                |
|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63호)                                      |
|     | 국토교통위원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75호)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74호) |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273호)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036호)                                 |

### 3. 개정안의 검토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는 형사책임능력판단과 관련하여 마음과 정신에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인 심신장애(心神障礙)와,<sup>3)</sup> 마음과 몸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하는 심신장애(心身障礙)로 구분됨.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등은 각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등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질병·장애의 판단과 관련된 심신장애(心身障礙)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3)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 및 의사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981년 제정된 舊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지체부자유, 시·청각장애 및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sup>4)</sup>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sup>5)</sup>

그런데,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되어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sup>6)</sup>

이에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어려움” 등의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 1981.6.5.] [법률 제3452호, 1981.6.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6)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이종성의원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특정 직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범문은 사고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인 의사가 하도록 하여 그 판단을 객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sup>7)</sup> 그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이 특별검사 등의 해임 사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sup>8)</sup>

두 법률 모두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나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7)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합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24.5.9.선고 2021다297529판결.

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특별검사 등의 해임 사유 입법례 》

|                      |                                                                                                                             |
|----------------------|-----------------------------------------------------------------------------------------------------------------------------|
| 특별검사의<br>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br><u>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
| 특별감찰관법               |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br><u>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문구를 2016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개정하였고,<sup>9)</sup>

이와 유사한 표현을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면 서로 직무수행 판단 주체·방법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심신장애’라는 표현만을 ‘심신쇠약’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2.3. 공포 및 시행)」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개정 전·후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u>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u> |

## 《 '심신쇠약' 표현 관련 유사 입법례 》

|              |                                                                                                                                     |
|--------------|-------------------------------------------------------------------------------------------------------------------------------------|
| <b>감사원법</b>  | <b>제8조(신분보장)</b>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br>2. <b>장기(長期)의 심신쇠약</b>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 <b>국세기본법</b> | <b>제67조(조세심판원)</b>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br>1. <b>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b>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관련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도 해당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법률의 통일적인 정비를 위해 타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5개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대상 법률에서 규정한 ‘심신장애’ 등 용어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함.

## IV. 개별 검토의견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10)                                                           | 개정안                                                                     |
|-----------------------------------------------------------------|-------------------------------------------------------------------------|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④<br>(생략)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④<br>(현행과 같음)                                       |
|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⑤ -----<br>-----<br>-----<br>-----.                                     |
|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 <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⑥ ~ ⑨ (생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

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해임·해촉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있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임. 다만, 해당 법 개정 내용이 본 장애인 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이며, 의안원문의 신규조문대조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는데, 이는 해당 직위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해당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의 조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위원이 심신상의 문제로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인바,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 소견을 위원이 개인적으로 구비하여 증빙하는 등의 자발적 행위를 해임·해촉 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령상 용어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심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醫師)의 진단 소견 등을 근거로 해

임 또는 해촉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은 개인 서류의 구비 및 증빙이라는 위원의 자발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당초 현행 규정에서 정한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의 의사(意思)에 따라 진단 소견을 제출하는 것은 위원의 자발적인 사임 의지를 피력하는 것과 유사하며 사실상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의 해임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원장) ① (생략)                                                 | 제12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② -----<br>-----<br>-----<br>-----.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

|                                 |                                                     |
|---------------------------------|-----------------------------------------------------|
| <u>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u> | <u>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4.·5. (생략)                      | 4.·5.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의 해임사유 중 하나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직위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해당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해임 요건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진단·소견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문서인바, 임용권자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해임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신장애’는 형법 등 많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령 용어 사용례 전반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용어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② (생략)<br>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br>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u><br>2. (생략) |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br>2.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에 해촉사유 중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직위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해당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해임 요건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진단·소견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문서인바, 임용권자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해임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신장애’는 형법 등 많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령 용어 사용례 전반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용어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br>~ ⑤ (생략)<br><br>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br><br><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br><br>2. ~ 4. (생략)<br><br>⑦ ~ ⑨ (생략) |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br>~ ⑤ (현행과 같음)<br><br>⑥ -----<br>-----<br>-----<br>-----.<br><br><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br><br>2. ~ 4. (현행과 같음)<br><br>⑦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법 제5조제1항), 소속 위원에게 해임 또는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를 전문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제6항).

그런데, 법 제5조제6항각호에 규정된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는바, 이는 해당 직위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해당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해촉 대상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자발적으로 발부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해촉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질환’으로 한정할 경우 물리적·신체 조직 손상 등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은 위원의 자발적 행위(진단서 발부 등)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임명권자의 해촉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⑨ (생략)<br>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br><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br><br>2. ~ 4. (생략)<br>⑪·⑫ (생략)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br>⑩ -----<br>-----<br>-----<br>-----.<br><u>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br>2. ~ 4. (현행과 같음)<br>⑪·⑫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법 제26조제1항), 위원에게 해임 또는 해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6조제10항).

그런데, 법 제26조제10항각호에 규정된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는바, 이는 해당 직위에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해당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특정 위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임.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척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표현을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위원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임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3 |